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인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04
----------	------

발의년월일 : 2018년 2월 28일

발 의 자 : 김인제, 김정태, 김미경 의원(3명)

찬 성 자 : 김기대, 유동균, 우미경, 남창진, 우창윤, 박운기, 이석주, 박양숙, 김혜련, 장인홍, 김제리, 전철수, 이정훈, 우형찬, 김문수, 최영수, 김용석(서초), 김동율, 김창원, 맹진영, 유 용, 성백진, 박마루, 김광수(도봉), 박호근, 오봉수, 강성언, 박기열, 신언근, 김경자(양천), 문종철, 이현찬, 박준희 의원(33명)

1. 제안이유

주거상황이 극히 불량하거나 적절한 주거를 영위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립과 자활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지원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등을 정의함(안 제2조)
- 입주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지원주택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
- 지원주택의 공급 및 편의시설 설치, 제공기관 선정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제9조)
-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 위촉해제 등을 규정함(안 제12조~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등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주택의 공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주택”이란 주거유지지원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주거유지지원서비스”란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란 지원주택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 및 지원) ①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선정기준과 절차, 우선순위 등 관련규정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

② 시장·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입주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 등 및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입주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이하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한다.

1.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2. 주택시설관리 지원
3.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4.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5.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6.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7.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제4조(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공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2. 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3.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제공기관은 시장 등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경우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시장 등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제2장 지원주택 공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주택의 건설 및 공급,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주택의 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3. 지원서비스의 제공방안
4. 편의시설 및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행방향 등을 정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주택의 공급)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4.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
5.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체주택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 등은 지원주택 공급 시 입주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등 특별한 소요를 반영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지원주택의 내·외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지원주택의 운영 및 관리

제9조(제공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공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서울주택도시공사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주택의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제공기관의 선정 및 운영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보고) ① 제공기관은 제4조에 따라 경비 및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업 착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공기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실적을 연 2회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결과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완료한 때
2.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3.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결정이 있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사업결과보고서를 요구할 경우

③ 제2항의 사업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영현황 및 실적
2. 경비 등 집행 및 정산 내역
3. 자체 평가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공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기관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제공기관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령이나 지원조건 위반, 신청 내용의 허위 등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자에게 자료제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취소나 철회, 지원의 보류 또는 중단, 이미 지급된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재정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3. 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주택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지원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제공기관은 비용의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등이 발생할 경우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등

제12조(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지원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2. 입주자 선정기준
3. 제공기관의 선정방법
4. 지원서비스의 유형결정 및 제공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서울시 주택정책 및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각 1인
2. 사회복지관련 법인에서 임·직원 또는 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거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임·직원 또는 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학, 도시계획학, 부동산학 등 건축·주택·복지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거복지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촉 해제된 후 1년 이내에 재위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본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 ⑩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시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3. 심의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해충돌 상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 등은 지원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학회 등 학술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홍보) 시장 등은 지원주택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이번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제4조(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제5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지원주택의 공급),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12조(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제14조(분과위원회), 제1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9조(교육·홍보) 등에서 비용 발생 요인이 있음

2. 비용추계의 전체

가. 대상

-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 및 지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보조 내용 추계
- 제4조(제공기관에 대한 지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계
- 제5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는 사용 후 재산가치 변동에 따라 비용(또는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계기간 이상 활용이 예상되고 발생규모의 추정도 불명확하여 제외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는 예상 용역비를 산정
- 제7조(지원주택의 공급)는 각 공급 형태별 사업예산에서 건설 또는 매입 후 지원주택으로 전용하므로 소요 비용 추계 제외
-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 등)는 수요의 변동에 따른 개조비용을 추계
- 제12조(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비용 추계
- 제14조(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비용 추계
- 제18조(관계기관과의 협력)는 필요 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대상이나 계획이 없어 추계에서 제외
- 제19조(교육·홍보)는 관련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추계에서 제외

나. 전제

- 공급 규모 :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물량의 3% 이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함
 - 입주 대상 :
 - 노숙자, 정신장애, 노인 분야(입주자의 75%)와 발달장애 분야(입주자의 25%)로 구분
 - 주택 1호에 1명이 입주하는 것으로 가정
 - 복지본부에서 노숙인 자활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지원주택 운영(38호)은 그 지원 대상이 노숙인으로 한정되어 본 조례안과 관련된 기존 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 그밖에 사업규모 확대, 인건비 인상, 물가상승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함
 - 편의시설 설치는 지원주택 확보 후 개조가 필요한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담당 부서의 구두 의견을 참고하여 대상을 전체 공급물량의 10%로 가정하고, 호당 개조비용은 단순 점자안내판 추가부터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로의 개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으나 일괄하여 500만원으로 추정함
 - 분과위원회는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함
- 다. 추계기간 : 시행 후 5년(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
- 라. 방법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5년간 274억 88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54억 98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단위 : 백만원)

연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구분	-	-	-	-	-	-	-
	소계(a)	-	-	-	-	-	-
세입	임대보증금 지원	12.0	24.0	36.0	48.0	60.0	180.0
	운영기관 지원	1,762.5	3,525.0	5,287.5	7,050.0	8,812.5	26,437.5
	계획 수립 용역	20.0	-	-	-	-	20.0
	편의시설 개조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위원회 운영	8.0	8.0	8.0	8.0	8.0	40.0
	분과위원회	12.0	12.0	12.0	12.0	12.0	60.0
	소계(b)	1,964.5	3,719.0	5,493.5	7,268.0	9,042.5	27,487.5
□ 총 비용(b-a)		1,964.5	3,719.0	5,493.5	7,268.0	9,042.5	27,487.5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훈
 예 산 분 석 관 한기백
 ☎ 02-3705-1284
 e-mail : hophan@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주거약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보조(안 제3조)
- 제공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안 제4조)
- 기본계획 예상 용역비(안 제6조)
- 편의시설 설치 비용(안 제8조)
-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비용(안 제12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비용(안 제14조)

2. 세부추계내역

가. 주거취약계층 지원(안 제3조)

-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연 공급물량 (누적) (단위 : 호)	300	600	900	1,200	1,500	1,500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단위 : 백만원)	12	24	36	48	60	180

- 지원 조건 : 호당 임대보증금의 70% 이내, 최대 2백만원, 이차보전 2%
- 융자 조건 : 5년, 융자금리 3.5%
- 1차년도(2019년) : $(300호 \times 2백만원 / 호 \times 2\%) = 12백만원$
- 5차년도(2023년) : $(1,500호 \times 2백만원 / 호 \times 2\%) = 60백만원$

- 임대료 보조

- 기존 사업인 '주거급여'와 '특정바우처'에서 지원

나. 지원주택 운영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안 제4조)

- 인건비

- ① 노숙인, 정신장애, 노인 분야

- 사례관리자 1인/거주자 10인,
- 연간 사례관리자 1인당 인건비 33백만원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지수에 의거 5급 3호봉 적용)

- 1차년도(2019년) : $(300호 \times 75\% \times 1명/10호) \times 33백만원/명 = 742.5백만원$
- 5차년도(2023년) : $(1,500호 \times 75\% \times 1명/10호) \times 33백만원/명 = 3,712.5백만원$

② 발달장애 분야 : 사례관리의 강도가 높아 타 분야보다 배치기준 강화

- 사례관리자 1인/거주자 2.5인 배치, 사례관리자 1인당 연 33백만원
- 1차년도(2019년) : $(300호 \times 25\% \times 1명/2.5호) \times 33백만원/명 = 990백만원$
- 5차년도(2023년) : $(1,500호 \times 25\% \times 1명/2.5호) \times 33백만원/명 = 4,950백만원$

○ 운영비

- 커뮤니티프로그램 운영 및 주택관리비 : 1백만원/10호 (강사료, 전기료, 전화요금, 공과금, 컴퓨터, 사무집기, 사무비품 등)
- 1차년도(2019년) : $(300호 \times 1백만원/10호) = 30백만원$
- 5차년도(2023년) : $(1,500호 \times 1백만원/10호) = 1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연 공급물량 (누적) (단위 : 호)	300	600	900	1,200	1,500	1,500	
인건비	①분야	742.5	1,485	2,227.5	2,970	3,712.5	11,137.5
	②분야	990	1,980	2,970	3,960	4,950	14,850
운영비	30	60	90	120	150	450	
계	1,762.5	3,525	5,287.5	7,050	8,812.5	20,562.5	

다. 기본계획 예상 용역비(안 제6조)

-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용역비 20백만원

라. 편의시설 개조비용(안 제8조)

- 대상 가구의 수 : $300호 \times 10\% \times 500만원 = 150,000천원/년$

마.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비용(안 제12조)

- 위원 구성 : 내부 4명, 외부 24명 등 총 28명
- 회의 개최 : 연 2회
- 1회당 : (외부위원 참석수당 24명×15만원/명)+40만원(운영비)=400만원
- 연간 비용 = 400만원×2회/년 = 800만원

바.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비용(안 제14조)

- 위원 구성 : 내부 2명, 외부 5명 등 총 7명, 4개 분과
- 분과별 회의 개최 : 연 3회
- 1회당 : (외부위원 참석수당 5명×15만원/명)+25만원(운영비)=100만원
- 연간비용 = 100만원×3회×4개 분과 = 1,200만원